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04

2021. 11. 24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4. 김진홍 의원 등 5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4.)
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)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여비의 지급구분 및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4조)

다. 영의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효섭)

○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강남구청장에서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적용받던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됨

○ 다만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

◈ 수정의견(안)

제 정(안)	수 정(안)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·② (생략)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이 따로 정한다.	**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** ①·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----------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제5조(영의 준용) (생략) 1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 장관”과 제28조 중 “소속 기관의 장”은 각각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“으로 본다.	**제5조(영의 준용) (제정안과 같음)** 1. ----------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

○ 토론과정 중,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504호

제안일자 : 2021. 11. 24.

제 안 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기관장명을 명확하게 하고, 오기된 인용조문 번호를 수정하려는 것임

2. 수정내용

가. 기관장명을 명확히 함(안 제2조, 안 제5조)

나. 오기된 인용조문 번호를 수정함(안 부칙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1조 중 “제5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“제5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·② (생 략)	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·② (원안과 같음)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이 따로 정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 ----------.
제5조(영의 준용) (생략)	제5조(영의 준용) (원안과 같음)
1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 장관”과 제28조 중 “소속 기관의 장”은 각각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”으로 본다.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“의장”---------- ----------.
1의2. ~ 6. (생 략)	1의2. ~ 6. (원안과 같음)
부칙	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.	제1조(시행일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 제4조-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	제2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

에 관한 적용례)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	에 관한 적용례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4조---------- ----------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(김진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4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4.
발 의 자 : 김진홍·최남일·이향숙·
복진경·안지연(이상5인)

1. 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등이 개정(‘22. 1. 13. 시행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여비의 지급구분 및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～4조)

다. 영의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"월액여비"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

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제5조(영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영 제17조・제22조・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 장관”과 제28조 중 “소속 기관의 장”은 각각 "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의 의장)"으로 본다.

1의2.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2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.

3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
4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
5.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

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6.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)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